

「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03호

「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
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 의거하여,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급식 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.

□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아동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가능하도록 아동급식위원회를 신설하고,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포괄적인 아동복지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위임할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주시고,
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